

항 소 장

항소인(피고, 반소원고) ♦♦♦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항소인(원고, 반소피고) ○○○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당사자간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(본소), 20○○가단○○○○(반소)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○○. ○○. ○. 판결선고하였는바, 항소인(피고, 반소원고)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(판결정본 수령일: 20○○. ○○.)

원판결의 주문표시

- 1. 20〇〇. ○. ○. 11: 30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4거리 교차로 상에서 원고(반소 피고) 소유의 광주○무○○○○호 승용차와 피고(반소원고) 운전의 광주○마○○○○호 오토바이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- 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- 3. 소송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의 부담으로 한다.

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 취지의 진술



항소인(피고, 반소원고)은 위 판결의 피고(반소원고)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^{**} 로 항소를 제기합니다.

항 소 취 지

- 1. 원심판결 중 피고(반소원고)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 원고)에게 금 33,116,065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제1, 2심 모두 원고(반소피고)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항 소 이 유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항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0. 00.

위 항소인(피고, 반소원고) ◇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제1심 법원(민사소송 법 제397조 제1항)	제 출 기 간	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'b' 의 '' 이내, 다만 판결서 송달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 ''
제출부수	항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 부본제출	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
불복절차 및 기간	<원심 및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결정> 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, 제402조 제2항) ·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 《항소심 판결> ·상고(민사소송법 제422조) 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, 제425조) 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
※ (1) 관 할

- 1. 고등법원 관할 사건
 -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(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)
- 2.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 :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

※ (2) 인 지

항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(소가)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.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(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). 다만,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 납부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